

재외선거운동 관련 금지·허용사례 안내

《인쇄물·시설물 및 언론이용 관련 사례》

인쇄물·시설물 이용 금지사례

- 재외국민이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(입후보예정자 포함. 이하 같음)의 직책·성명 등을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시 배부하거나 교회·식당 등에 비치·배부하는 행위
-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·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·잡지 등을 종전의 방법 또는 범위를 벗어나 배부·살포·게시·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·살포·게시·첨부하는 행위
-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

※ 후보자는 카드·연하장 등도 보내면 안되나요?

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재외국민에게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·추천하는 내용없이 수편으로 카드·연하장 등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.

※ 정치인 팬클럽이 회원들에게 행사개최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?

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일정을 게재한 안내장 등을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언론이용 금지사례

- 한인신문·한인회보 등에 후보자의 성명, 사진 또는 업적 등을 광고하는 행위
- 방송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
- 언론사관계자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부각하고, 선거공약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

주의!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를 외국인 등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함께 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.

